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(대표발의: 이민석 의원)

의안 번호	21-80
----------	-------

발의년월일: 2021. 8. .

발의자: 강명숙, 권영숙, 김성희, 김영미,
이민석, 장덕준, 채우진, 최은하

1. 개정이유

자전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시설을 년 1회 정기적으로 점검 및 보수하도록 명시하고, 도난방지를 위해 자전거 이용시설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자전거이용시설을 “상시” 점검에서 “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” 점검하고 보수하도록 변경(안 제7조 제1항)
- 나. 자전거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의 도난방지를 위해 자전거이용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신설(안 제7조 제4항)

3. 관계법령

- 가. 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4조

4. 조 례 안: 붙임

5. 예산조치: 없음

6. 기타사항

가. 관계법령: 붙임

나. 입법예고: 2021. 8. 26. ~ 8. 31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상시”를 “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자전거주차장의 설치·관리자는 자전거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의 도난방지를 위해 자전거이용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CCTV를 설치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·관리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자전거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차등 자전거이용시설을 <u>상시</u>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7조(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----- <u>년 1회</u> 이상 정기적으로 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<u>자전거주차장의 설치·관리자는 자전거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의 도난방지를 위해 자전거이용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CCTV를 설치할 수 있다.</u></p>

【관 계 법 령】

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

(약칭: 자전거법)

[시행 2021. 1. 1.] [법률 제17689호, 2020. 12. 22., 타법개정]

- 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.
- ③ 특별시장·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국가가 제2항에 따라 시·군·자치구(이하 “시·군·구”라 한다)에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시·군·구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- ④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촉진 및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제7조 제4항 ④ 자전거주차장의 설치·관리자는 자전거주차장 및 주차
된
자전거 등의 도난방지를 위해 자전거이용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CCTV
를
설치할 수 있다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
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교통건설국 교통행정과 박준홍
연 락 처	02-3153-9642